

[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6-52호]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[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]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[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]을 발송하였으나 ‘폐문부재’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10. 7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



1. 건 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
2. 근 거: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사업장명 (법인등록번호)	주소	대표	위반내용	과태료 부과예정액	공시송달내용
1	(주)이산건설 (475411-0005439)	전북 전주시 정여립로 1115, 504호	전기선	수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026년 4월분 962,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	1,000,000원	과태료 자진납부 고지 및 의견진술

4. 공고기간: 2026. 10. 7. ~ 2026. 10. 22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와 국호근(전화 063-450-05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